

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(제67조의3제3항 관련)

평가항목	
1. 참여기술자 능력	가. 경력 나. 실적 다. 교육훈련 라. 그 밖의 추가 항목
2. 업체 능력	가. 실적 나. 신용도 다. 그 밖의 추가 항목
3. 이적계수	최근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

비고

1.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2. 발주청은 해당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성질·내용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에 따른 배점, 평가방법 등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.
이 경우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